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장정희 의원)

의안 번호	23-4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3. .

발 의 자 :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 
신종갑, 이한동, 장정희,  
차해영, 채우진, 한선미

## 1. 제정이유

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(안 제2조)
- 나.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## 3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회계법」 제14조(결산의 수행)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3. 17. ~ 3. 22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장(결산)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회계법」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예비비 지출 승인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예비비 지출 보고)**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, 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5조(구청장의 의무)**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

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지방회계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- 제14조(결산의 수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12>
-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43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5.28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5.28, 2021.1.12> [전문개정 2011.8.4.]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

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무과 지출팀 최은희
연 락 처	02-3153-8634